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44
----------	-------

제출년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박은경, 박태순, 설호영
한명훈, 유재수, 한갑수
박은정, 선현우, 현옥순
최찬규, 김유숙, 황은화
김진숙, 송바우나, 이지화
의원(15인)

1. 제안이유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 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8)